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
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
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
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9월 26일

발 의 자 : 양순임, 이용진, 이일준, 이관우,
임태근, 이인순, 박영섭, 고영옥,
소형준, 김경이, 임현주, 정기혁,
정윤주, 김육영, 정해숙

1. 제안이유

우리나라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.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(안 제4조)

라.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교통행정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9. 26. ~ 2023. 10. 1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고령운전자”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(교육)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
1.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
2.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
3.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

제5조(정보제공 및 홍보 등)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
2.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